200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- 경제제도 및 법규 -

- ▣ 중산·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
- ▣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
- ▣ 제조물책임제도 도입
- ▣ 준조세 정비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
- ▣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
- ▣ 이동전화요금 인하
- ▣ 우편요금 조정
- ▣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 확대
- ▣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
- ▣ 부산·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·운영
- ▣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
- ▣ 전국 4대강 수계특별법 완성
- ▣ 주5일 근무제 실시
- ▣ 산업재해요율(골판지포장제조업) 17/1000 인하 (50p 참조)
- ▣ 농·어업용 골판지포장재 부가가치율 영세율적용 (45p 참조)

§ 중산 ·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§

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(503-9210)

⊙ 중산 · 서민층의 소득세 · 부가가치세 부담을 총 1.7조원 경감하였습니다.

-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평균10%인하
- 중산 · 서민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3천만원이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
- 장애인 ·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장애인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
-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(간주임대료 제도)를 폐지
- 농 · 어민의 영농 · 영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 ·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신설
  -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: 농업용 포장상자(종이재질의 농 · 축산물 포장용), 하우스용 파이프 등 5종
  - 기자재의 범위 : 양어장용 비닐, 목재 어상자 등 8종

⊙ 중산 · 서민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지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1억원이하의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
- 금융기관에서 2,000만원이하 대출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
- 영세상인들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

§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§

재정경력제부 개발협력과 (503-9140)

⊙ 2002. 1월부터 수출거래관련 다양한 수출금융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- 수출입은행이 외국환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고, 수출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수출입대외거래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

⊙ 대외거래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위험인수 및 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.

- 현재 수출입은행은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했으나, 관련규정의 완화를 통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상업은행이 회피하는 위험의 적극 인수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담보제공 등의 어려움이 경감됩니다.

⊙ 조달비용 인하를 통해 대출이자율 및 보증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경쟁력이 보다 강화됩니다.

- 수출입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원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조달금리인하로 수출거래에 따른 대출이자율 및 보증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.

§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§

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(503-9060)

⊙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됩니다.

-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(수입업자, 표시제조업자)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,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(무과실책임제도 도입)을 말합니다.
  -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·가공된 모든 동산이며, 제품의 결함이란 [제조,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]을 말합니다.
- 다만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면책됩니다.
  -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
  -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·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
  -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
  - 원재료·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

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

-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-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
  -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(다만,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)

§ 준조세 정비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§

기획예산처 재정 1팀 (3480-7741)

⊙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·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[부담금관리기본법]이 제정되어 시행(2002.1.1)됩니다.

- 부담금 부과요건 등이 법정화됩니다.
  - 법률에 설치목적·부과요건 및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
- 부담금의 부과원칙이 명시됩니다.
  - 최소성, 투명성·공정성, 이중부과금지의 원칙
- 부담금 신설시 부담금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.
-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,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
-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며, 이를 위해 운용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게 됩니다.
-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.
- 불합리한 부담금이 정비됩니다.

〈2002. 1. 1일 폐지(9개)〉

-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분담금
-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
- 농업·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
-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
-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관리비
-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

-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사업주부담금
-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
-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

〈2004. 1. 1일 폐지(2개)〉

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(2004.1.1폐지)
-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(2004.1.1폐지)
  - 징수유예(1개)
-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(비수도권은 내년부터, 수도권은 2004년부터 징수유예)

§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§

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 (503-7607)

⊙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출연금의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의 사용·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소유·사용에 관한 절차등 기본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

- 집행잔액 : 연구개발재투자 → 정부지분 국고 납입(다년도 과제는 이월사용)
- 지적재산권 : 정부 또는 전문기관(타부처) → 주관연구기관 소유
- 기술료 징수 : 정부출연금 이상 징수 →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
  - 정부출연금 초과분 :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사용
  - 전문기관 이체분 (기업 50%, 이외기관 30%) : R&D, 기금 등에 전입
  - 연구기관사용분 : 인센티브(50%이상), R&D(30%이상), 기관운영(10%이내), 산업재산권 출원·관리 등

⊙ 연구개발사업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비카드제의 적용, 연구원가제의 실시 등을 실시합니다

- 신설사항으로는
  - 총100억원 이상시 국과(위) 사전심의 의무화
  - 강제탈락제, 이의신청제, 추적평가제, 연구비카드제 도입
  - R&D 평가백서 발간권고 및 R&D 사업의 보안관리 반영

- 규제4건 신설 : 위반시 제재, 연구비 사용방법 제한, 실시계약제한, 보안관리

● 부처별로 주요 상이사항은 통일 했습니다

- 협약 : 단년도 협약 → 다년도 협약 병행
- 과제선정 : 선정원칙 통일(전문성, 객관성, 공정성 유지)
- 연구비목 : 4개 비목, 14개 계상기준으로 통일
  - 간접경비 : (인건비+직접비)×15%이내 인정
    ※ 출연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산정
  - 산업재산권 출원·등록비는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계상
  - 연구홍보비에 대한 별도 계상기준 반영
- 위반사항 제재정도 : 참여제한 기간을 1~2년으로 통일

§ 이동전화요금 인하 §

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(750-1351)

⊙ 서민층의 요금부담 완화와 통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8.3% 수준의 이동전화요금이 인하됩니다 (2002. 1. 1.시행)

●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는 1만 6,000원에서 1만 5,000원으로, 통화료도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됩니다.

●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인층, 저소득층 등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에 적합하게 저가의 선택요금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

§ 우편요금 조정 §

정보통신부 우편기획과 (2195-1212)

⊙ 일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가 인상 · 조정됩니다.(2002년 상반기)

●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9.5% 인상 조정합니다.

● 국내 보통편지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, 등기수수료는 1,000원에서 1,100원으로, 국제통상우편물은 10.4% 인상되며 대신 빠른우편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인하됩니다.

§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 확대 §

농림부 농업정책과 (500-1665)

⊙ 농작물재해보험 실시품목을 사과·배에서 포도·단감·감귤·복숭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●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01년의 순보험료 30%·운영비 50%지원에서 순보험료 50%·운영비 70%지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보험료를 경감하고

● 보장수준 다양화, 보험료 분납제도 도입, 필지별 가입허용, 시·군별 보험요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● 보험운영은 농협중앙회가 담당하며 일선 조합은 보험가입안내, 계약체결,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⊙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적정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.

* 지난해 경북 청송의 사과재배 농가 이모씨의 경우 8,745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서리 피해에 의한 보험금 93,410천원을 지급 받습니다.

§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§

농림부 유통정책과 (2110-4335)

⊙ 협동조합중심으로 지원된 유통사업자금의 지원대상범위를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하고, 전국에 300여개(시.군당 2~3개소)의 산지 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여,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

● 2003년까지 중기(3년), 저리(년3%)의 정부자금을 1조원이상 투입할 계획이며,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에게는 70억원 범위내에서 집중 지원하고,

* 지원액 : (2000) 2,113 → (2001) 2,500 → (2002) 4,000 → (2003) 3,500억원

●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선도농협형, 연합마켓팅형, 마켓팅법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육성하여

● 대외시장개방, 대형유통할인점 급증 등 소비지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

유통조직을 전문화, 규모화 하고자 합니다.

⊙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되면 유통시설 및 자재비, 선별 및 포장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

- 집하선별포장장,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과 선별기, 광폭차량, 냉동차량, 파렛트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고
-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 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게 선별 및 포장비용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.

§ 부산 ·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· 운영 §

해양수산부 항만운영개선과 (3418-6661)

⊙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.1.1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을 개시합니다.

⊙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통관절차 · 관세등 제세공과금이 감면됩니다.

- 우선 관세자유지역의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· 부가가치세 ·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지원되며
-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에 대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내국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.
- 특히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,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가 감면됩니다.

⊙ 또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화물의 장치 · 보관 · 저장에서부터 상표부착 · 혼합 · 재포장 · 조립 · 전시 · 재수출 등 다양한 활동이 허용됩니다.

⊙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기업주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, 관세청(지방세관)에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.

⊙ 관세자유지역은 물류거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미국, 유럽, 싱가폴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등에 약 8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
§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§

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(503-7565)

⊙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생계비가 3.5% 인상됩니다.

- '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'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작년보다 3.5% 인상됩니다.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1년에는 매달 95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, 금년에는 3.5% 늘어난 99만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게 되어 국가가 절대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게 됩니다.

〈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〉

(단위: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최저생계비	345,412	572,058	786,827	989,719	1,125,311	1,269,809
현금급여기준	304,100	503,639	692,722	871,348	990,723	1,117,939

※ 현금급여기준 :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

§ 전국 4대강 수계특별법 완성 §

환경부 수질정책과 (2110-6830)

⊙ 전국 4대강 수계의 물관리특별대책이 완성되어, 21세기 국내·외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-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(300m, 500m, 1㎞)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식점, 숙박시설, 목욕장, 공동주택, 공장과 축사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하천구역중 국·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농약사용의 과용, 오용, 남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

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, 댐 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·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· 금강 · 영산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·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§ 주5일 근무제 실시 §

노동부 근로기준과 (503-9742)

⊙ 2002. 2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계획

⊙ 근로시간단축은 '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 하에서 노동계가 실업감소와 고용유지의 방법으로 이를 제기함에 따라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.

⊙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자 삶의질 향상과 자기계발의 필요성 증대, 고용창출의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와 상당수 개발도상국에서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

⊙ 2000.10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로 인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며,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간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<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의 주요내용>

- 일하는 시간을 2,000시간 이내로,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단축
- 휴일 · 휴가제도의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 및 휴일 · 휴가의 사용 확대
- 근로시간 단축의 업종별 · 규모별 단계적 시행

⊙ 노-사간 쟁점사항은 연월차휴가의 상한선과 임금보전의 범위 및 주5일제 시행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.

- 연월차휴가 상한선
  - 경총은 일본기준 10~20일 안, 한국노총은 18~22일 안을 주장
- 임금보전
  - 노동계 : 주5일제가 되더라도 임금수준 자체가 저하되어서는 안됨

- 경영계 : 연월차휴가 수당분까지를 보전해주기는 곤란

● 제도 시행시기

- 노동계 :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002년 전면시행
- 경영계 : 아무리 빨라도 2003년 이후가 되어야 하며 특히, 중소기업은 10년뒤 시행을 주장

⊙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

§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등 특허관련 요율 인하 §

특허청 기획예산과 (042-481-5043)

⊙ 회사의 분할·합병에 따른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 변경신청료가 인하됩니다.

● 회사의 분할·합병에 따른 산업재산권 이전등록료 인하내용

- 특허권(매건 5만3천원 ⇒ 매건 1만4천원)
- 실용신안권(매건 4만원 ⇒ 매건 1만4천원)
- 의장권(매건 4만원 ⇒ 매건 1만4천원)
- 상표권(매건 11만 3천원 ⇒ 매건 1만4천원)
- 전용실시·사용권, 통상실시·사용권, 질권(매건 4만3천원 ⇒ 매건 1만4천원)

● 회사의 분할·합병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인변경신청료 인하내용

- 매건 1만3천원 ⇒ 매건 6천5백원

⊙ 특허 및 의장등록출원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의 보정료(전자화비용)가 인하됩니다.

● 인하내용

- 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·도면의 보정료(매건 8천원 ⇒ 매건 5천원)
-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도면보정료(매건 4천원 ⇒ 매건 3천원)